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제345회 임시회

2016.01.29.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의안번호: 제330호
- 제출일자: 2016년 01월 15일
- 회부일자: 2016년 01월 15일

3. 제안이유

교육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을 조정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변경함

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1) 지방공무원 총수: 3,150명 → 3,133명(△17명)

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3)

1)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총정원: 2,914명 → 2,896명(△18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 전문직원 총정원: 236명 → 237명(+1명)

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보임직급에 맞게 직급 조정(안 별표3): 3·4급(△4) → 3급(+4)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을 조정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법령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50명에서 17명 감원된 3,133명으로 하였음.
- 제2조제1호의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총정원을 2,914명에서 18명이 감원된 2,896명으로 하였으며,
- 제2조제2호의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의 총정원을 236명에서 1명이 증원된 237명으로 하였고,
- 안 제4조는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3·4급 복수직급 정원 4명을 감원하고, 3급 정원 4명을 증원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보임직급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조직 개편시 발생하는 인력을 감원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범위내로 감축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이라 사료되나, 일반직 정원 감축에 따른 업무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33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880	-		
3급	5	5		
4급	19	18	1	
5급 이하 소계	2,843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237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34	23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03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p>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150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2,914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p> <p>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 236명</p>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 (직속기관 포함)</th> <th>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th> <th>공립 각급학교</th> </tr> </thead> <tbody> <tr><td>총계</td><td>3,150</td><td>-</td><td>-</td><td>-</td></tr> <tr><td>정무직 계</td><td>1</td><td>1</td><td></td><td></td></tr> <tr><td>교육감</td><td>1</td><td>1</td><td></td><td></td></tr> <tr><td>일반직 계</td><td>2,898</td><td>-</td><td>-</td><td>-</td></tr> <tr><td>3급</td><td>1</td><td>1</td><td></td><td></td></tr> <tr><td>3·4급</td><td>4</td><td>4</td><td></td><td></td></tr> <tr><td>4급</td><td>19</td><td>18</td><td>1</td><td></td></tr> <tr><td>5급 이하 소계</td><td>2,861</td><td>-</td><td>-</td><td>-</td></tr> <tr><td>전문경력관 소계</td><td>13</td><td>-</td><td>-</td><td>-</td></tr> <tr><td>연구직 계</td><td>12</td><td>-</td><td>-</td><td>-</td></tr> <tr><td>연구사 소계</td><td>12</td><td>-</td><td>-</td><td>-</td></tr> <tr><td>교육전문직원 계</td><td>236</td><td>-</td><td>-</td><td>-</td></tr> <tr><td>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td><td>34</td><td>23</td><td>11</td><td></td></tr> <tr><td>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td><td>202</td><td>-</td><td>-</td><td>-</td></tr> <tr><td>별정직 계</td><td>3</td><td>-</td><td>-</td><td>-</td></tr> <tr><td>5급 상당 이하 소계</td><td>3</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50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898	-	-	-	3급	1	1			3·4급	4	4			4급	19	18	1		5급 이하 소계	2,861	-	-	-	전문경력관 소계	13	-	-	-	연구직 계	12	-	-	-	연구사 소계	12	-	-	-	교육전문직원 계	236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4	23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02	-	-	-	별정직 계	3	-	-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	-	<p>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p> <p>제2조(정원의 총수) ----- ----- 3,133명-----</p> <p>1. (현행과 같음)</p> <p>2. ----- ----- 2,896명----- -----</p> <p>3. ----- ----- 237명-----</p>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 (직속기관 포함)</th> <th>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th> <th>공립 각급학교</th> </tr> </thead> <tbody> <tr><td>총계</td><td>3,133</td><td>-</td><td>-</td><td>-</td></tr> <tr><td>정무직 계</td><td>1</td><td>1</td><td></td><td></td></tr> <tr><td>교육감</td><td>1</td><td>1</td><td></td><td></td></tr> <tr><td>일반직 계</td><td>2,880</td><td>-</td><td>-</td><td>-</td></tr> <tr><td>3급</td><td>5</td><td>5</td><td></td><td></td></tr> <tr><td>4급</td><td>19</td><td>18</td><td>1</td><td></td></tr> <tr><td>5급 이하 소계</td><td>2,843</td><td>-</td><td>-</td><td>-</td></tr> <tr><td>전문경력관 소계</td><td>13</td><td>-</td><td>-</td><td>-</td></tr> <tr><td>연구직 계</td><td>12</td><td>-</td><td>-</td><td>-</td></tr> <tr><td>연구사 소계</td><td>12</td><td>-</td><td>-</td><td>-</td></tr> <tr><td>교육전문직원 계</td><td>237</td><td>-</td><td>-</td><td>-</td></tr> <tr><td>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td><td>34</td><td>23</td><td>11</td><td></td></tr> <tr><td>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td><td>203</td><td>-</td><td>-</td><td>-</td></tr> <tr><td>별정직 계</td><td>3</td><td>-</td><td>-</td><td>-</td></tr> <tr><td>5급 상당 이하 소계</td><td>3</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33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880	-	-	-	3급	5	5			4급	19	18	1		5급 이하 소계	2,843	-	-	-	전문경력관 소계	13	-	-	-	연구직 계	12	-	-	-	연구사 소계	12	-	-	-	교육전문직원 계	237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4	23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03	-	-	-	별정직 계	3	-	-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50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898	-	-	-																																																																																																																																																																		
3급	1	1																																																																																																																																																																				
3·4급	4	4																																																																																																																																																																				
4급	19	18	1																																																																																																																																																																			
5급 이하 소계	2,861	-	-	-																																																																																																																																																																		
전문경력관 소계	13	-	-	-																																																																																																																																																																		
연구직 계	12	-	-	-																																																																																																																																																																		
연구사 소계	12	-	-	-																																																																																																																																																																		
교육전문직원 계	236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4	23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02	-	-	-																																																																																																																																																																		
별정직 계	3	-	-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33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880	-	-	-																																																																																																																																																																		
3급	5	5																																																																																																																																																																				
4급	19	18	1																																																																																																																																																																			
5급 이하 소계	2,843	-	-	-																																																																																																																																																																		
전문경력관 소계	13	-	-	-																																																																																																																																																																		
연구직 계	12	-	-	-																																																																																																																																																																		
연구사 소계	12	-	-	-																																																																																																																																																																		
교육전문직원 계	237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4	23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03	-	-	-																																																																																																																																																																		
별정직 계	3	-	-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	-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35호, 2015.6.22., 일부개정]

제29조의3(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①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도의회회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6.11.]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타법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8.>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검토 의견

민원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검 토 의 견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곽은기	별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규칙상의 보임직급을 맞추기 위해 상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 현재 34급을 복수직급으로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오히려 중앙도서관장은 상위법령에 사서직으로 보한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으로 매우 부당함 ○ 6급, 7급 등 하위직급의 승진 적체가 심각하여 집단적 사기 저하와 근로의욕 상실의 원인이 되므로 하위직 정원을 시급히 확대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함 ○ 타 시, 도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평균 이상으로 상향하는 노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단됨 	“반대”	<p style="text-align: center;">“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임직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정원책정승인),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정원 승인 신청 서류)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과 교육전문직원 중 본청의 과장담당관 이상, 교육지원청의 국장 이상,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정원 책정의 적정성,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정원을 기구정원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함 *'13.2.22.자 시·도교육청 조직정원 담당자 회의 시 승인받은 직위에 대하여 기구·정원 자치법규 개정 지시: '13.7.1.자 기구규칙 개정완료 후 미개정 상태인 정원조례를 금번 개정하려는 것임 ○ 중앙도서관장 사서직 보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별표1)에 따라 행정, 세무, 전산,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서, 속기, 방호 등 행정직군의 3급은 직렬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원책정기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교육청의 실제 직급별 책정 정원은 높은 편으로 비율 상향을 통한 직급별 정원 책정은 총액인건비 부담 증가를 초래해 교육환경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민원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검 토 의 견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이준	제2조	○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감축되는데 교육국 업무가 행정국으로 이관된다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 시설관리직이나 운전직 같은 경우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공무원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p>“미반영”</p> <p>○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시 학생수 감소분을 반영·교부하고 있어 매년 총액인건비 재정 현황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 본청기구 슬림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3.1.자 본청 조직개편 시 발생하는 인력을 감원하는 것으로 행정수요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